

춘천지방법원 2024. 10. 16 선고 2024가단34746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9. 25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표시
부분 49.587㎡를 인도하고,

나. 2023. 3. 23.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6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판단

별지 청구원인(변경된 청구원인 포함) 기재 사실은, 갑 1 내지 4호증(가시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4. 5. 31.경 해지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인도하고, 2023. 3. 23.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6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유성희

별지